

경 기 도

훈 계 요 구

제 목 ○○ ○○지구 행복주택건설사업 승인 관련 협의내용 미이행 등
소 관 기 관 경기주택도시공사 (○○○○○○○처)
조 치 기 관 경기주택도시공사 (○○○○○실)
관 계 자 ① ○○○○단 ○ ○ ○ ○ ○ (1900.00.00.)
② ○○○○○○처 ○ ○ ○ ○ ○ (1900.00.00.)
③ ○○○○○○○○○단 ○ ○ ○ ○ ○ (1900.00.00.)
내 용

위 사람들 중 ○○○은 2017.00.00.부터 2019.00. 0.까지, ○○○은 2017. 00.00.부터 2018. 0.00.까지 그리고 2021. 0. 0.부터 현재까지, ○○○은 2017. 0. 0. 부터 2018. 0. 0. 까지 ○○○○○○○공사(이하 ‘○○’라 한다) ○○○○○○○처에 근무하면서 ○○ ○○(○○○)지구개발사업¹⁾ (이하 ‘○○○○’라 한다.) 내 행복주택건설사업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거나 총괄하였다.

○○ 「취업규정」 제6조에 따르면 직원은 법령과 공사의 제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 계획(사업계획 변경 포함)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53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35조에 따른 권한을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1) (사업기간) 2000.~2000 / (위치) ○○시 ○○읍 ○○리 일원 / (개발면적) 0,000,000㎡ / (총사업비) 0,000억 원 / (준공인가) 2000.00.00. / (승인권자) ○○○○○○○○청 / (사업시행자) ○○○○○○공사(○○), ○○○○공사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르면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구역의 개발사업 등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며,

같은 법 제30조 및 제35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통보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계획 등을 시행할 때에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청(현 ○○○○○○○○○청, 이하 ‘○○○○청’이라 한다.)에서는 2014. 0.00. ○○○○○○○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인 ○○지구 내 생태면적률²⁾ 30.01% 이상 확보 의무를 통보³⁾받음에 따라

2014. 0.00. 위 생태면적률 확보를 위해 같은 해 ○월경부터 ○○와 협의해오던 ○○지구 내 산업·물류시설용지에는 25%, 공공주택용지에는 52%를 각각 생태면적률로 확보하기로 확정하고 이를 ○○지구 실시계획 등에 반영하도록 ○○에 통보⁴⁾하였다.

따라서 위 사람들은 ○○지구 실시계획(변경)과 그 승인조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등을 성실히 이행했어야 마땅했다.

1. ○○○의 경우

○○에서는 2017.00.00. ○○지구 행복주택 건설을 위해 ○○도 ○○○○과(이하 ‘○○○○과’라 한다.)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다.

이에 ○○○○과에서는 2017.00.00. ○○지구 승인권자인 ○○○○청에 의제 협의를 요청하였고

이에 ○○○○청에서는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지구 실시계획 등을 준수하고, ○○와 협의 후 처리하라는 의견을 회신 하였고,

2) ○○ ○○(○○○) 지구 전체 계획생태면적률은 30.01% 이며 주거시설(공동주택)은 52%임
3) 환경영향평가서(본안) 협의내용 알림 <○○○○○○○○청 ○○○○과-○○○○(2014. 0.00.)>
4) 환경영향평가서(본안) 협의내용 알림<○○○○○○○○○○청 ○○○○과-○○○(2014. 0.00.)>

○○○○과에서는 2017.00.00. ○○에 ○○○○청의 위 협의의견 등을 포함하여 의제 협의를 요청하였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위 행복주택 건설사업에 ○○지구 공공주택용지의 위 생태면적률(52%) 확보 여부에 대한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않은 채, 2018. 1.23. ○○○○과에 관계규정을 준수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회신하였으며,

○○○○과에서는 2018. 0.00. 위 생태면적률이 전부 반영(총 5,383.7㎡, 2021. 0.00. 현재 확보 1,760.0㎡, 미확보 3,623.7㎡)되지도 않은 위 행복주택 사업계획을 승인하게 되었다.

한편, ○○○○청에서는 2020.00월 경 ○○지구 준공인가(2020.00.00.)를 앞두고 비로소 위 행복주택 건설사업에 생태면적률 미확보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으며, 아래 【표1】과 같이 ○○로 하여금 6차 ○○지구 실시계획변경에 이르러서야 위 생태 면적률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표 1】 ○○지구 실시계획(변경) 생태면적률 반영여부

구 분	실시계획 승인일	실시계획 고시일	생태면적률 반영여부	비 고
최초 승인	2014. 0. 0.	2014. 0. 0.	미반영	1차 변경계획에 반영토록 조건 부여(○○○○청 → ○○)
1차 변경	2017. 0.0.	2017. 0.00.	미반영	
2차 변경	2018. 0.00.	2018. 0.00.	미반영	
3차 변경	2019. 0.00.	2019. 0.00.	미반영	
4차 변경	2020. 0. 0.	2020. 0. 0.	미반영	
5차 변경	2020. 0.00.	2020.00. 0.	미반영	
6차 변경	2020.00.00.	2020.00.00.	반 영	○○ 홈페이지 등 별도 공지

이에 따라 ○○에서는 내부 논의를 거쳐 위와 같은 미확보 생태면적 3,623.7㎡를 포송지구 내 ○○ 소유의 유보지⁵⁾(44,712㎡) 중 일부에 대체 확보하는 것으로

5) 미래 개발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한 부지로서 그 용도는 추후 지정 예정

결정⁶⁾하고 2021. 0.00. 00000청의 동의를 받아⁷⁾ 2021. 0.00. 00도 00000과(00000과에서 업무이관)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⁸⁾을 받았다.

그 결과, 위 사람은 위와 같은 잘못된 행복주택 사업계획 등으로 미반영된 생태 면적 3,623.7㎡를 유보지에 전가하게 함으로써 유보지의 효율적인 활용 제약 및 매각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하였다.

2. 0000, 0000의 경우

위 사람들은 위 0000의 업무 등에 관한 관리 감독자로서 행복주택 건설사업 계획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는 등 그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위 사람들은 위 1과 같이 잘못된 행복주택 사업계획 등으로 유보지의 효율적인 활용 제약 및 매각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하였다.

관련자 주장 및 판단

위 사람들은 자신들의 업무의 소홀히 한 점 등을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다.

따라서, 위 사람들의 행위는 GH 「취업규정」 제6조(성실의무) 등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직원 훈계 등 처분에 관한세칙」 제6조(처분사유)에 해당한다.

※ GH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54조2에 따른 징계시효(3년) 도과

조치할 사항 경기주택도시공사장은

- ① 위 0000, 0000, 0000에 대해 「직원 훈계 등 처분에 관한세칙」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② 앞으로 소속 직원들의 업무추진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6) 0000(000) 인허가 협조요청건에 대한 회신 <0000000공사 0000부-0000(2021. 0.00.)>

7)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보완 제출에 따른 재협의 의견 회신 <00000000청 00과-0000(2021. 0. 0.)>

8)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알림[00000 00행복주택 <00도 0000과-0000(2021. 0.00.)>